

제 34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 2020년 04월 03일
 위원정수: 9명, 참석위원: 9명

1. 일 시 : 2020년 04월 10일

2. 장 소 : 교무처장실

3. 참 석

구 분	직 명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참 석 자 (9명)	위원장	정 명 희	0		
	위 원	위 상 배	0		
	위 원	현 영 렬	0		
	위 원	이 지 훈	0		
	위 원	김 영 천	0		
	위 원	이 준 열	0		
	위 원	서 의 정	0		
	위 원	김 소 남	0		
	위 원	송 윤 석	0		
불 참 자					

4. 안 건 :

- 1)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항목별 기준표 심의 건(개정 2020.4.10.)
- 2)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실적 심의 건

5. 회의내용

위원장 (정명희)

오늘 본 대학 제 345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 사 (조아랑)

오늘 안전은 1)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항목별 기준표 심의 건(개정 2020.4.10.), 2)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실적 심의 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정명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지훈)

검토 결과,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항목별 기준표는 규정에 맞추어 세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무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검토, 논의되었네요. 이에 세칙에 맞추어 실적을 교육활동의 1)충원율, 2)취업률, 3)강의평가, 봉사활동의 4)근무평정, 5)봉사활동(교내/교외), 연구활동의 6)연구, 기타의 7)기타(상별) 영역으로 예년과 동일한 항목과 점수 배정으로 평가함에 동의합니다. 각 항목별 산정안이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근거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전으로 실적의 경우는 고지한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실적과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제출자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은 기본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제출 실적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합리적인 듯합니다. 두 안전 모두 절차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김영천)

저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확인해보니 퇴직자와 사직자 등에서 해당년도 실적이

있으신 분들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다보니 평가대상자가 작년과 비슷하네요. 충원율 외에 평가항목들의 배점은 예년과 동일하지만 각 기준에 따라 기본점수 인정 등의 사항 변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심의하면서 연구실적과 용역내역의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재정사업관련 보고서, 대학평가이행실적 등은 인정하되 한 가지만 인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실적에서는 특히 교재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학과의 행사용으로 발간된 교재 등은 인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연구업적 미달 시 기본점수는 미반영하여 0점 처리가 적절하여,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오늘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제출한다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봉사활동에 관련해서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기사 등의 명확하게 000(서정대학교 000교수) 등으로 명확하게 홍보가 되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이준열)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동감하며 의견주신 바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특히 취업률에 대한 사항은 예년과 동일하게 공시된 유지취업률 등과 함께 반영하여 배점은 달라졌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이 여러 과들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행세칙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방향이 적절하여 제반절차 진행에 문제없어 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현영렬)

기타 항목에 심화 및 산업체위탁 운영에 대해 학과 노력의 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과발전 기여도로 추가 산정한 것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격증 등에 대한 항목도 세척기준에 맞추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김소남)

저도 검토해보니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주신 바대로 원안대로 동

의합니다.

위원 (송윤석)

네, 절차상 적절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서의정)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현영렬)

네, 없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희)

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체)

동의합니다. (전원찬성)

위원장 (정명희)

오늘 상정된 안건인 1)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항목별 기준표 심의 건(개정 2020.4.10.) 2) 2019학년도(2020년) 교원업적평가 실적 심의 건은 동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0년 04 월 10 일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위원장

정병진 (인)

위원

최상민 (인)

위원

현영권 (인)

위원

이지훈 (인)

위원

김민남 (인)

위원

서미자 (인)

위원

김영진 (인)

위원

이진영 (인)

위원

송윤석 (인)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항목별 기준표(개정 2020.04.10.)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평가등급 구분			
항	목						
교육 활동	충원율	정보공시	20	○ 정원내 전체 15점 + 전년대비 향상률 5점			
	취업률	정보공시	20	○ 취업률 5점 + 수도권평균 취업률 10점 + 전년대비 향상률 5점			
	강의 평가	절대평가	15	○ 평점 2.0을 기준으로 7.5점을 부여하고, 추가점수는 소수점에 7.5점을 곱해 합산 ○ 2.0미만-1.5이상은 5점/100%연구업적추가, 1.5미만은 0점/200%연구업적추가 * 위탁생 및 끝학기 제외			
봉사 활동	수행 평가	근무평정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0-16	15-11	10-6	5-0
				○ 센터프로그램 및 부서업무 참여도, 민원, 징발사항 등 반영			
	봉사 활동	교내봉사	15	A급	B급	C급	D급
				15-10	11-5	9-5	5-1
				○ A급: 실장, 처장, 단장, 전산센터장, 도서관장 등 ○ B급: 중앙부처장(과장), 센터장, 학부장 및 학과장a 등 ○ C급: 부센터장, 학과장b 등 ○ D급: 기타 보좌자 등			
		교외봉사	5	○ 기본 4점, 상한 5점 ○ 학회 이사급/공공기관위원급 이상(협회 불인정), 재단법인 위원급 0.2점(최대 2건) ○ 학교 차원의 행사, 홍보, 방송 등 인정(최대 4건) - 중앙방송·종편·조중·동 신문 건당 0.2점/기타 지역방송·신문 건당 0.05점			
연구 활동	연구	연구실적 (개인)	5	○ 기본 2.5점, 상한 5점 ○ SCI급(0.8점), 등재지(후보지), 교재(0.4점)/기타(0.2점) ○ 재정사업관련보고서 100%까지 인정, 교재는ISBN 및 내용과 질을 엄격 적용 ○ 연구적용 기간은 학기개시-종료일로 정함, 교내봉사 A급 50%, B급 25%기본 인정 ○ 최초 200%/2년, 이후100%/2년, 단 강의평가결과1.5-2.0 100%추가, 1.5미만 200%추가 ○ 작품, 공연 3등급(A국제50%, B전국30%, C지방10%)차등, 공동(0.7/0.5/0.3) 적용 ○ 특허(실용실안 제외) 건당 0.1 최대 0.3 ○ 기본연구업적 미달 시 기본점수 미반영 * 대학평가이행실적(0.8-0.4), 기관인증평가(0.6-0.2), 정부재정지정사업 등(0.4-0.2) 인정			
	용역	금액기준 (개인)	5	○ 기본 2점, 상한 5점. 평가인정금액은 교육비 환원을 기준으로 산정 ○ 연차사업: 1년차 100%, 2년차 75%, 3년차 이후 50%, 재공모(재심사)사업은 1년차로 인정 ○ 연구참여자 기여도 비율별로 적용 ○ 천만원 미만 백만원당 0.1점, 일억원 미만 천만원당 0.1점, 일억원 이상 일억원당 0.2점 ○ 장학금 유치: 백만원 기준 0.1점 ○ 학교기업 인정			
기타	상 별	수상, 포상 등	20	○ 자격 및 경시대회 총10점: 기본5점 + (국가자격 5, 민간자격 2.5, 경시대회 2.5 비율) 반영 * 개인별 배정금액: 총 배정금액 × (개인점수/전체교수점수 총합) - 기술사, 기능장 1명: 2점 - 기사, 산업기사 1명: 0.5점 - 어학고급(토익 550점 이상에 준하는 어학 점수) 1명: 0.5점 - 전산세무 1명: 0.5점 - 산업기사 이하 국가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 1명: 0.25점 - 어학초급(토익 500-549점에 준하는 어학 점수) 1명: 0.25점 - 전산회계 1명: 0.25점, 비교: 전문기술자 자격증에 해당사항이 없는 학과에 대한 기준 * 개인별 배정금액: 총 배정금액 × (개인점수/전체교수점수 총합)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1명: 0.05점 - 민간자격증 1명: 0.02점 * 개인별 배정금액: 총 배정금액 × (개인점수/전체교수점수 총합) - 기능올림픽대회 대표 1명: 3점 - 국제대회/정부주관 국내대회(장관, 광역단체장급): 1등 건당 1점, 2등 건당 0.2점 - 정부주관 국내대회(청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급): 1등 건당 0.3점 - 협회주관 국내대회: 1등 건당 0.05점 - 기타 수상실적: 건당 0.01점 - 단체전 지도는 2배로 계산 * 공무원 1점(해당연도 졸업생 취득만 인정) ○ 기타: 심화 및 산업체위탁 운영 실적 2점			
특이 사항				○ 평가등급 : A 25%, B 25%, C 35%, D 15%. 등급 우선 절상 ○ 전임교원이 자기발전 또는 향후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 등을 받기 위해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5%이내에서 연봉을 차감할 수 있다.			